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금 융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며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인사과·자본시장조사단·금융소비자국·금융정책국 및 금융산업국”을 “행정인사과·금융소비자국·금융정책국·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및 정책관 등”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제26호”를 “제13호”로 한다.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8. 집합투자업·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감독
13.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후단 중 “21명을”을 “22명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금융소비자국 및 금융산업국”을 “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을 “20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를 “61”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본시장국 1개 과	3명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u>행</u> <u>정인사과 · 자본시장조사단 · 금</u> <u>융소비자국 · 금융정책국 및 금</u> <u>융산업국을 둔다.</u> ② (생 략)	제7조(하부조직) ① ----- <u>행정</u> <u>인사과 · 금융소비자국 · 금융정</u> <u>책국 ·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u> <u>국-----.</u>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① 자 <u>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u> <u>으로 보한다.</u>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 <u>항을 분장한다.</u> 1. <u>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u> <u>래 조사의 기획 · 총괄 및 조</u> <u>정에 관한 사항</u> 2. <u>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u> <u>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u> <u>에 관한 사항</u> 3. <u>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u> <u>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u> <u>관한 사항</u> 4. <u>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u> <u>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u> <u>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u> <u>른 조치에 관한 사항</u> 5. <u>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u>	<u><삭 제></u>

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
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
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
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
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3. (생략)

14.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
책의 수립

15.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금융
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
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

-----.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인가 · 허가 · 구조조정 · 감독</u>	
<u>16.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 · 감독</u>	<u><삭 제></u>
<u>1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 유통에 대한 관리 · 감독</u>	<u><삭 제></u>
<u>1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u>	<u><삭 제></u>
<u>19. 기업공개 · 상장제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0.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 · 감독</u>	<u><삭 제></u>
<u>21. 집합투자업 · 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 · 허가 · 구조조정 · 감독</u>	<u><삭 제></u>
<u>22.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 · 감독</u>	<u><삭 제></u>
<u>23.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u>	<u><삭 제></u>
<u>24.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 · 감독</u>	<u><삭 제></u>
<u>25.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 · 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u>	<u><삭 제></u>

에 대한 관리·감독

26.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2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14. -----
----- 제13호-----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

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공개 · 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8. 집합투자업 · 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 · 허가 · 구조조정 · 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 · 감독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 · 감독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 · 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 · 감독

13. 증권 · 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의 기획 · 총괄 및

	<u>조정에 관한 사항</u> 15. <u>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u> 16. <u>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u> 17. <u>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21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22명</u> ----- ----- ----- ----- ----- ----- ----- -----

으로 한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u>금융소비자국 및 금융산업국</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u> <u>및 자본시장국</u> -----.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30</u>		<u>232</u>	+2	
	.		.		.		
	.		.		.		
일반직 계			<u>227</u>		<u>229</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3</u>		<u>205</u>	+2	
	.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1	70	-1
일반직 계	63	62	-1
3급 또는 4급 이하	62	6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7